

제 1430 호  
1989. 2. 10

서울특별시  
인민 : 서울특별시 관공서 731-6111-3  
보안 : 서울특별시 중앙합판공장  
전화 : 735-3337

# 시 보

## 차 례

① 공문시행  
 불용물품관리진환 ..... 4  
 불용물품관리진환 ..... 6  
 불용물품관리진환 ..... 8

② 조 례  
 제 2413 호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 9  
 제 2414 호 : 서울특별시중·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출업학력검정  
 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14

이면계속

내 림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㉔ 규 칙

제 2268 호 :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	15
---------------------------	----

## ㉕ 고 시

제 19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하수도 ) 지적	16
제 20 호 : 사료성분등록사항	16
제 28 호 : 도시계획사업 ( 지하철도및부대시설 ) 시행허가변경	17
제 44 호 : 최고기연동가격고시	18
제 45 호 : 주유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18

## ㉖ 공 고

제 23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및하수도 ) 실시계획공람	21
제 25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및하수도 ) 실시계획공람	22
제 26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및하수도 ) 실시계획공람	23
제 30 호 : 도시계획사업 ( 시외버스정류장 ) 시행에따른공람	24
제 37 호 : 제 2 종건기공사업면허실호	25
제 38 호 : '89 상반기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시행계획	25
제 44 호 : 제 2 종건기공사업영업정지	26
제 46 호 : 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학교, 공용청사, 가스공급설비, 사회복지시설, 도로) 변경및신설안공람	26
제 54 호 : '89 서울특별시공무원제안모집	27
제 65 호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및관제도면공람	31
제 71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공람	33
제 81 호 : 제 2 종건기공사업체행정처분 ( 취소 )	37
제 85 호 : 제 2 종건기공사업체행정처분 ( 취소 )	37
제 105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변경안공람	37

## ㉗ 구 고 시

제 1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시행허가 ( 취소 )	38
제 1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변경허가	38
제 3 호 : 민영주택사업계획변경승인	39
제 6 호 : 도시계획사업 ( 일단지주택조성사업 )	40
제 8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시행허가	41
제 9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	41

제 15 호 : 도시계획사업 (시장)시행변경허가 ..... 42  
 제 59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수도)실시계획공관 ..... 43

㉓ 구 공 고

제 2 호 : 도시계획사업 (유치원)공사완료 ..... 43  
 제 7 호 : 주택재개발사업등록취소 ..... 44  
 제 41 호 : 도시계획사업 (도로, 하천)실시계획변경 ..... 44  
 제 58 호 : 광인및제인 실·개각 ..... 55

㉔ 사업소공고

제 1 호 : 동물사로구매입찰공고 ..... 55

㉕ 공지사항

전화번호변경안내 ..... 56

㉖ 사 령

공 문 시 행

김 포 수 원 지 사 무 소

김 수 00343-36

602-3787

1989. 1. 13.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불용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1. 우리수원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불용물품에 대하여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 61 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전환 소요를 조회하오니 필요한 부서에서는 '89. 1. 25 까지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라나,

2. 귀 기일까지 관리전환요청이 없을시는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첨부: 소요조회대상 물품명세서 1부. 끝.

김 포 수 원 지 사 무 소 장

수신처: 시산하전기관

소요 조희대 상 물 품 명 세 서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장부가액	취득일	상태	비고
5930-097	단로기	25KV 1,200A	조	1	495,000	84.12.29	신	수도사업회
5930-130	과워용스	25.8KV 200A	"	1	484,000	83. 7.18	"	"
5930-097	단로기나이프 접속자	육외 23KV	개	3	9,000	83 이전	"	"
"	DS알날	7.2KV 1,200A	"	1	3,000	"	"	"
"	"	7.2KV 600A	"	1	3,000	"	"	"
"	"	7.2KV 400A	"	2	6,000	"	"	"
5970-017	특고편애자	23KV	"	6	68,000	"	"	"
5970-011	지지애자	교압 케이블용	"	5	8,250	"	"	"
5970-094	현수애자	1/2 "	"	2	30,000	"	"	"
6240-012	수은등램프	100V 300W	"	24	136,800	"	"	"
6210-011	수은등안정기	120V 300W	"	19	270,750	"	"	"
3110-090	베어링	6308	"	2	11,920	"	"	"
"	"	6409	"	4	42,900	"	"	"
3110-017	"	30312	"	2	28,130	"	"	"
3110-070	"	32215	"	2	19,300	"	"	"
7430-001	타자기 (수동)	15 N "	대	1	125,000	1979. 10	중 고	"

서 울 특 별 시

주 기 30411-

731-6386

1989. 1.30.  
( 5 권 )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물품관리전환 소요조회

1. 우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중 주택건설확대추진법 해체액 따라 지방재정법 제61조의3에 의거 관리전환 소요여부를 조회하니 '89.2.15 까지 관리전환 요청하시기 바라며,

2. 위 기일내 관리전환 요청이 없을시은 관리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음.

가. 물품관리전환명세서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 명	구 격	수 량	금 액	취 득 년 월 일	물품의 상 태	불 용 사유	회 계
5805-003-1500	전화기	GS 5200F DP/MFC	5	52,250	88. 8.31	중 고	주택건설확대 추진법해체	일 반
7110-003-3004	책 상	철재 4종	6	190,000	88. 8.19 울림팩토 독담당관 관리전환	"	"	"
-3004	"	"	6	97,080	미상	"	노 후 회	국민주택비 특별 회계
7110-005-3003	와 자	3 A종	2	60,000	88. 8.19 울림팩토 독담당관 관리전환	"	주택건설확대 추진법 해체	일 반
-4651	"	철재 회진불가 팔걸이유	3	28,233	"	"	"	"

정부물품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금액	회신 일	품의 상태	불용사유	비 고
7105-002-1004	응탁 접자	1200 X 600 X 450	1	65,450	88.11.18	중	구택건설화 의추진반 의해	의 반
7110-005-4671	안락 의자	방색 구로완지	1	76,450	"	"	"	"
7105-013	응세 접트	방색 장의자, 안락2 보조2	1	301,400	"	"	"	"
7110-003-3218	책 상	양수 1350 X 800 X 750	1	86,900	"	"	"	"
7110-005	의자 (서기)	특전회전	1	79,200	"	"	"	"
7430-020-4110	전동 타자기 (영.한 용)	금성 GTS 8400	1	506,000	85. 1.	"	"	"
7195-016	간막이	알미늄천	2	24,000	미상	"	노후화	구 신 주 택 비 특 별 회 계
<p>서울특별시</p>								

“뚝모아 하나로 힘모아 세제로”

용 산 구

총무 01754-2469 710-3310 '89. 2. 1.

수신 서울특별시청

제목 물품관리 전환 소요조회 등재요청

1.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오니 필요한 부서에서는 관리전환 요청하기 바랍니다.

가. 관리전환 소요조회내역

품 명	규격	단위	수량	장 부 가 격	취득년월일	상 태
S/T교반기	200 회선용	대	1	8,000,000	75. 10. 1	재 품
중 계 대	2 피석	대	1	3,500,000	78. 5. 30	"
간이시험기	AP-2	대	1	400,000	75. 10. 1	중 고
정 류 기	100V 15A	대	1	485,000	80. 7. 15	"

나. 희망부서 관리전환 요청기간: '89.2.15 까지

다. 희망부서 관리전환 요청연락처: 용산구청 총무과. 읍.

용 산 구 청 장



조 례

이에 공포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 행정권한위임조례중 개정조례를

1989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2413 호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율령픽준비단란에 "제 11 호" 및 "제 1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문화재 매매업허가 및 허가 취소      ◦ 문화재 보호법 제 61 조      구청장 및 제 65 조
- 12 문화재 매매업 휴·제업 신고      ◦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제 44 조 제 2 호      구청장

[별표] 보건사회국란에 "제 42 호" 내지 "제 4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2 사실직업안내소 지도감독      ◦ 직업안정법 제 25 조      구청장
- 43 구인구직의 계획 및 구직알선      ◦ 직업안정법 제 2 조      구청장
- 44 직업소개 및 직업 지도업무에 종사할 직원의 교양 및 훈련      ◦ 직업안정법 제 23 조      구청장
- 45 직업 지도      ◦ 직업안정법 제 2 조      구청장

[별표] 산업경제국란에 "제 54 호" 내지 "제 71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4 염 (합수) 제조허가      ◦ 염관리법 제 3 조      구청장
- 55 완구제조업체 보고징수      ◦ 공산품 품질관리법 제 18 조      구청장
- 56 학용품제조업체의 보고징수      "      구청장
- 57 일반공산품 품질조사 및 보고      "      구청장

58	수입계량기 판매업 등록	○ 계량법 제 15 조	구청장
59	주유기 수시검사	○ 계량법 제 30 조	구청장
60	계량기 수리업 허가	○ 계량법 제 13 조	구청장
61	계량기수리업 공장이전 신고수리	○ 계량법 시행령 제 19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5 조	구청장
62	계량기수리업 폐업신고 수리	○ 계량법시행령 제 21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6 조	구청장
63	사업장의 계량의 자치 관리 인정	○ 계량법 제 46 조	구청장
64	계량기수리업 계량기 사용의 이동신고 수리	○ 계량법시행령 제 46 조 제 3 항	구청장
65	가계표시 의무자의 지정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3 조	구청장
66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 16 조	구청장
67	상품권 발행등록 및 명령	○ 상품권법 제 1 조의 3	구청장
68	석유판매업(주유소) 허가	○ 석유사업법 제 12 조	구청장
69	석유판매업(주유소)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 석유사업법 제 13 조	구청장
70	석유판매업(주유소, 판매소)에 대한 석유류품질 검사 및 기타 지도감독	○ 석유사업법 제 18 조의 2 제 2 항 및 제 20 조	구청장
71	건기용품 제조업체 개선 명령(시설의수리, 개조 또는 보완 명령)	○ 건기용품 안전관리법 제 24 조	구청장
[별표]	도시계획국관중 "제 7 호" 및 "제 8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란		
	에 "제 10 호" 및 "제 11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의 수리, 허가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권고 및 선매자지정등에 관한 사항(다만, 공업지역 : 5,000㎡, 녹지지역 : 3,300㎡.	○ 국토이용 관리법 제 21 조의 3, 제 21 조의 4, 제 21 조의 7, 제 21 조의 8 제 21 조의 14	구청장

8

기타지역 : 1,650 ㎡  
이하에 한함)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비행정청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다음 각호의 업무에 한하되, 도로중 본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도로(폭 30 m 이상의 도로제외)

나. 광장(폭 30 m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교통광장 제외)

다. 폭 13 m 미만의 하천(2 개 구이상 연결노선 제외)

라. 하수도(종말처리장제외)

마. 학교(교육대학, 사범대학 및 대학제외)

바. 소매시장

사. 운동장(단일종목에 한함)

아.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단, 30 만㎡미만에 한함)

자. 주차장 및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차. 공용의 청사(단, 지역단위청사에 한함)

카. 소방설비, 저수지, 공동묘지, 공공공지, 유원지

다. 사회복지시설, 도서관연구시설, 문화시설, 종합의료시설, 시내버스정류장

파. 화장장, 방조설비, 방풍설비, 유류저장및 송유설비, 궤도, 삭도, 도살장,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통신시설, 방수설비, 관광합

○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제 1 호  
구청장

○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제 25 조  
구청장

- 10.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승인 및 고시(제 8 호 마름내지 과목에 계기한 시설과 아래시설에 한함  
다만, 2 개구이상 관련되거나 다른 행정구역의 시설은 제외)  
가. 도로, 광장  
나. 철도, 고속철도  
다. 하천, 하수도, 공동구  
라. 운하, 항만  
마. 수도, 유수지
- 11. 도시계획시설(제 8 호 가목내지 과목에 계기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의 실효고시, 지정내용의 공고, 징수규약의 인가, 도시계획사업의 공사완료 보고 및 접수, 준공검사 준공검사 필증교부와 공고

-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제 1 호      구청장
- 도시계획법 제 14 조, 제 23 조제 5 항, 제 57 조의 2, 제 65 조제 4 항, 및 제 85 조      구청장
- 주택건설촉진법 제 33 조      구청장
- 환경보전법 제 26 조의 2      구청장
- 환경보전법 제 15 조      구청장
- 환경보전법 제 16 조      구청장
- 환경보전법 제 16 조의 2      구청장

[별표] 건설관리국란에 "제 12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11 층이상 건축 심의 제외)

[별표] 환경녹지국란에 "제 24 호" 내지 "제 40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4. 비산분진발생원 시설관리 (환경지청 소관 제외)
- 25.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 26.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신고수리 및 검사
- 27.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명령

28. 배출시설 또는 광역시설의 개선등의 명령	○ 환경보전법 제 17 조	구청장
29. 배출시설의 조업금지등의 명령	○ 환경보전법 제 18 조	구청장
30. 사업장의 이전 명령	○ 환경보전법 제 19 조	구청장
31. 배출부과금의 납부명령	○ 환경보전법 제 19 조의 2	구청장
32. 허가의 취소	○ 환경보전법 제 20 조	구청장
33. 위법시설의 대한 폐쇄 및 조업정지명령	○ 환경보전법 제 21 조	구청장
34. 배출시설 관리인의 임명	○ 환경보전법 제 23 조	구청장
35. 배출시설 관리인의 변경	○ 환경보전법 제 23 조의 2	구청장
36. 연료사용제한 또는 번갈음 명한 사업장에 대한 감독	○ 환경보전법 제 27 조	구청장
37. 유류의 생산판매 및 사용 제한등을 명한 유류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감독	○ 환경보전법 제 27 조의 2	구청장
38. 오염물질의 제거 명령	○ 환경보전법 제 37 조제 2 항	구청장
39. 청문	○ 환경보전법 제 62 조의 4	구청장
40. 과태료의 부과 징수	○ 환경보전법 제 69 조의 2	구청장
[별표] 교통국관증 "제 47 조"를 다음과 같이하고, 동관에 "제 50 조" 내지 "제 59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7. 자동차 정비책임자의 책임 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 57 조 제 2 항	구청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소장
50. 자동차정비업 허가(등록포함)와 사회장이 이전 및 시설변경에 대한 허가	○ 자동차관리법 제 49 조	구청장
51. 자동차정비업자의 신고(대표자의 변경, 사업의 개시, 휴지, 폐지 등) 수리	○ 자동차관리법 제 51 조	구청장

- 52. 자동차정비업의 양도양수 인가 또는 신고수리 ○ 자동차관리법 제 52 조 구청장
- 53.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개선 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 53 조 구청장
- 54. 자동차정비업의 취소 또는 정지명령 ○ 자동차관리법 제 60 조제 1항 구청장
- 55.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청문 ○ 자동차관리법 제 67 조 구청장
- 56. 과징금처분 및 징수(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제 1 호제 6 호, 제 14 호, 제 16 호, 제 22 호, 제 26 호해당행위는 제외) ○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1 조의 2 구청장
- 57. 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청문 ○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1 조의 3 구청장
- 5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6 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75 조 제 1 항제 5 호 구청장

부 칙  
이 조에는 198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포 문)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중학교 입학자격,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징수조  
례중 개정조례들 이에 공포한다.

1989.2.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장 김상준

◎서울특별시조례제 2414 호

서울특별시 중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검  
정고시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학교입학자격,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  
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별표 1) 중 고시료난을 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료난과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료난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p>		<p>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개정규칙</p>	
<p>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료</p>	<p>2,700 원</p>	<p>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료</p>	<p>3,000 원</p>	<p>제 25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 27 조 제 2 항 제 1 호, 제 2 호 및 제 7 호의 구성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특별임용시험과 법 제 27 조 제 2 항 제 1 호, 제 2 호 및 제 7 호의 구성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규 칙</b></p>		<p>1. 5급이상공무원, 연구관, 지도관, 의사</p>	
<p>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p>		<p>2. 연구, 지도 및 의료직구령 별표 2 의 4 제 1 호 내지 제 3 호 해당약사</p>	
<p>1989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고 건 인</p>		<p>3. 연구, 지도 및 의료직구령 별표 2 의 5 제 1 호 내지 제 2 호 해당간호사</p>	
<p>◎서울특별시규칙제 2268 호</p>			
<p>급류 및 등급 시험구분</p>	<p>공개경쟁시험</p>	<p>특별임용시험</p>	
<p>5 급, 연구관, 지도관, 의사                  약사, 간호사</p>	<p>20 세 ~ 45 세                  20 세 ~ 40 세</p>	<p>20 세 ~ 45 세                  (의사는 상한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음)</p>	
<p>6, 7 급, 연구사, 지도사</p>	<p>20 세 ~ 40 세</p>	<p>20 세 ~ 45 세</p>	
<p>8, 9 급</p>	<p>18 세 ~ 35 세</p>	<p>18 세 ~ 40 세</p>	
<p>기능직 7 등급 이상</p>	<p>18 세 ~ 40 세</p>	<p>20 세 ~ 45 세</p>	
<p>기능직 8 등급 이하</p>	<p>18 세 ~ 35 세</p>	<p>18 세 ~ 40 세</p>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19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수도) 지적 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003 호('88. 12.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수도)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동대

문구 전동동 597외 70-전동동 597의 69간 토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적승인하였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 및 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14  
서울특별시장

아 래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하수도) 지적 승인 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시 점	중 립	비 고
기 정	소로	3	4	25	동대문구전동동 597-70	전동동 597의 69	
변 경 (폐지)	"	3	4	25	"	"	폐 지
신 설	하수도		4	25	"	"	하수도 신 설

나. 고사도면: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0 호**

사료 성분 등록 사항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항의 규정

에 의거 사료성분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한다.

1989. 1. 17  
서울특별시장

1. 제조업체명: 위미원배합사료공장  
2. 소재 지: 서울시영등포구다림동 629-6



3. 대표 자: 김 재 방

4. 성분등록내역

등록번호	사료의명칭및용도	사 료 성 분 량					
		조단백	조지방	조실유	조회분	칼슘	인
16-254	착유 4-2호 (비유량 30 이상)	이상 21.0	이상 4.5	이하 9.0	이하 10.0	이상 0.7	이상 0.5
16-254	젓먹이 돼지사료 2호 (2개월미만)	18.5	3.5	5.5	9.0	0.6	0.4

◎서울특별시고시제 28 호

도시계획사업(지하철도 및 부대 시설) 시행허가 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79 호(81.3.23)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되고 동고시 제 331 호(81.9.10)로 실시계획 인가된 지하철 2호선 선정차량기지 인입선 구간중 일부 노선의 토지, 지번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 803 호(88.9.31)로 변경 고시되었기 사업시행 변경 허가에 앞서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명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계실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 21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양천구 신정동 (132, 215, 249번지 일대)
- 구로구 신도림동 (332, 330, 344번지 일대)
- 구로구 고척동 (31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라 명칭

- 지하철 2호선 제 2차량기 및 인입선 건설공사

다. 석유사업행위요건						
상업설						
구분	시설명	폭원(m)	연장(m)	기	종	비고
거점	현철도 수도입설	10	2,250	영등포구드림동 330	양천구신길동 217	
별경	"	13-32	2,250	"	"	
<p>수량기거 : 258,577 ml ( 78,220 경 )</p> <p>리.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석초주 방배동 177-7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 김명년</p> <p>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착수년월일 : '89. 9. 10 준공년월일 : 91. 12. 30</p> <p>바. 사용합보지, 전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생략 )</p> <p>사. 사업계획명면도 : 별첨 ( 생략 )</p> <p>아. 공립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설계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582-9492 )</p>				<p>에 관한 규정 ( 농림수산부 고시 제 88-24 호, 88.9.14 ) 제 8 조 및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최고기 연동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p> <p>1989. 2. 1 서울특별시 장</p> <p>1. 최고기 연동가격 ( 정육 100 g 당 ) 980 원</p> <p>2. 시행일 1989. 2. 2 부터</p>		
<p>◎서울특별시고시제 44 호</p> <p>최고기 연동가격 고시</p> <p>최고기 및 패지고기 소비자가가격제도</p>				<p>◎서울특별시고시제 45 호</p> <p>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고시</p> <p>석유사업법시행령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989. 2. 2 서울특별시 장</p>		

1. 신철철차

주유소의 위치를 알고자 하는자는 제출서류(제3호)를 구비하여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접수하여야 한다.

2. 허가기준

가. 인적제한

- (1) 석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2)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아닌자
- (3) 일반매리점 경영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나. 지역제한

- 1) 주유소의 설치위치는 광화문, 원표를 기점으로한 도심반경 5km 이상 외곽지역으로서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취소된 동일장소에 법령에 정한 기간경과후 재허가시나 자동차 정류장(터미널)내 설치

시(터미널 수용차량의 한하크 이용조건)는 예외로 한다.

- 2) 주유소 상호간 거리(담 또는 외벽으로부터 상호간 직선거리)는 70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취소된 동일장소에 법령이 정한기간 경과후 재허가시나 자동차 정류장(터미널)내의 설치허가(터미널 수용차량에 한하여 이용조건)시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허가 시에는 예외로 한다.
- 3) 주유소 시설물 외벽으로부터 가연성가스의 제조, 충전소 및 3톤이상 저장시설의 외벽까지 14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4) 주유소 경계선으로부터 학교 경계선까지 2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교육구청장의 설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주유소는 주택건설촉진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또는 어린이 놀이터 경계(외벽 또는 담장)로부터 직선 거리 70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6)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학교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 이라야 한다.

다. 설치기준

- (1) 저장시설 : 40ℓ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저장 시설 이라야 한다.
- (2) 주유기 : 4 대 이상이어야 한다.
- (3)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시설 : 1 개소(남, 여 구분 설치하고 총면적 10㎡ 이상)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고시 제431호 기준에 적합하여

야 한다.

- 라. 취급유종  
휘발유(고급, 보통, 무연), 경유, 등유에 한한다.

3. 제출서류

- 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 나. 토지등기부 등본
- 다. 공중된 토지주의 사용승낙서(타인 토지의 경우에 한한다.)
- 라. 인근 주유소, 다른 위험물 취급시설, 공동주택 및 학교와의 거리측정 도면

4. 허가신청 처리

- 가. 제출서류가 완비되면 관공기관 의 사전 협의를 거쳐 주유소 허가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사후 처리한다.
- 나. 동일지역에 결합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출서류를 완비하여 접수된 순위로 하되 동일자 접수분에 대하여는 인건기준 주유소와의 거리 측정결과 원거리를 우선 처리한다.

부 칙

1. 이 고시는 1989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전에 허가된 주유소는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보며 장소이전 허가시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종전의 "주유소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 790호('86.10.29))"는 이를 폐지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 2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 계획 공람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77 호('62.12.18)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구간의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 부터 14 일 간 공람토록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 합니다.

1989년 1월 20일

서울특별시장

-공 램 개 요-

1. 사업의 시행자: 서대문구 천연동 48의 6 - 48의 9 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로 및 하수도
3. 사업의 규모: 도로 B=12m L=23m, 하수도 D=450mm L=23M
4.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0.6.30 까지
5.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서대문구청장)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7. 보상계획

가. 대상물건조사 참조

나. 보상절차

-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협의계약 체결후 취득
- 협의 불응시 토지수용법 제 25 조 2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77 조 규정에 의거 수용및 사용

다. 보상금 지급방법

- 토지: 계약과 동시 전액지급
- 건물: 계약과 동시 70%, 철거완료후 잔액지급

라. 관계도면: 생략

◎서울특별시 공고 제 25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 계획 공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 177 호 ('62.12.18) 로 신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구간 의 도로에 관한 도시계획사업 (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의 규정

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공람토록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가름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토목과,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합니다.

1989. 1. 20

서울특별시

-공 략 개 요-

1. 사업의 시행지: 서대문구 새마을병원-경기대학간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로 및 하수도
3.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B=12 M, L = 45M, 하수도 D = 450 % L = 290M
4.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89.12.30 까지
5. 공람공고기간: 1989. 1.17 ~ 1.30

6.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서대문구청장)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별첨

가. 토지조서: 별첨

나. 건물조서: 별첨

8. 보상계획

가. 대상물건: 별첨 물건조서 참조

나. 보상절차

·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협의지약 체결후 취득

· 협의불성시 토지수용법 제2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규정에 의거 강제수용

다. 보상금 지급방법

· 토지: 계약과 동시 전액지급

· 건물: 계약과 동시 70% 할거완료후 전액지급

라. 관계도면: 생략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 2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59 호(83.3.19)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구간의 도로의 대한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실시계획을 수립 도시계획법 제25조2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공람토록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한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공고로 가름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면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합니다.

1989. 1. 20

서울특별시장

- 공 람 개 고 -

1. 사업의 시행자: 서대문구 남가좌1동 105의 5 - 105의 8
2. 사업의종류및명칭: 도로및 하수도
3. 사업의규모: 도로개설 B=8M L=50M, 하수도 D=600mm, L=50M
4.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90.12.30 까지
5. 공람공고기간: 1989. 1.20~ 2.2
6.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장 (서대문구청장)

<p>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가. 토지조서: 별첨,                  나. 건물조서: 별첨</p> <p>8. 보상계획                  가. 대상물건: 별첨물건조서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상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정평가 금액에 의하여 협의의약 체결후 취득</li> <li>· 협의 불응시 토지 수용법 제 25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77조 규정에 의거 강제 수용</li> </ul> </li> <li>○ 보상금 지급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계약과 동시 전액 지급</li> <li>· 건물: 계약과동시 70%, 철거완료후 잔액지급</li> </ul> </li> <li>○ 관계도면: 생략</li> </ul>	<p>◎서울특별시공고제 30 호</p> <p>도시계획사업 (시외버스 여객자동차정류장) 시험에따른서류의공람공고</p> <p>1. 당시 고시 제 921 호('88.11.24)로 도시계획시설 (시외버스 여객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지적승인된 서초구 서초동 1446 의 1 일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 에 의거 서류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자 14 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p> <p>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통국 교통기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니 본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으면 공람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 서울특별시 장</p>				
<p>사업의명칭</p> <p>도시계획사업 (남부 시외버스 정류장 신축 이전)</p>	<p>위 치</p> <p>서초구 서초동 1446-1 일대</p>	<p>사업 내용</p> <p>매 지 : 49,196.9 ㎡                  연건평 : 155,266 ㎡</p>	<p>사업시행자</p> <p>서울남부 터미널 (주) 대표이사 김충우</p>	<p>공람기간</p> <p>'89. 1. 16 ~ 1.30</p>	<p>공람장소</p> <p>서울특별시 교통국 교통기획과</p>
<p style="text-align: center;">(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p> <p>* 기타 상세한 내용 및 의견은 교통기획과(735-6716)에 문의 또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p><b>◎서울특별시공고제 37 호</b></p> <p>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실호</p> <p>전기공사업법 제 30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제 2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p>음과 같이 실호처분 하였고 동법 제 4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 .</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	--

면허번호	업 체 명	소재지	대표자	사	유
제 298 호	태 동 전 기 건 설 공 사	양천구 신정동 1012-1	강 울 회	전기공사업법 제 30조 5 항 ( 전기공사업 제제 )	

<p><b>◎서울특별시공고제 38 호</b></p> <p>1989년도 상반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시행계획</p> <p>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9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 .</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특별시장</p> <p>1. 명예퇴직대상</p> <p>2. 급이하 일반직, 지방소방정감이하</p>	<p>의 소방공무원및 기능직 지방공무원으로서 명예퇴직신청개시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p> <p>가. 정년퇴직일전 1년이상 5년내 자진퇴직하는자</p> <p>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상태로 되어 정년퇴직일전 5년이상 10년내에 자진퇴직하는자</p> <p>2. 명예퇴직신청</p> <p>가. 신청기간: '89.3.1 ~ '89.3.5</p> <p>나. 신청절차: 명예퇴직희망자는 신청기간내에 소정의 신청서류를</p>
---	--

<p>구리하여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은후 시장에게 제출할것</p> <p>3. 경계퇴직대상자의 심사결정 및 통지 서울특별시장은 명예퇴직신청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p> <p>4. 경계퇴직대상자의 사직원제출 명예퇴직의 결정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그통지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p> <p>5. 수당지급 소속기관장은 명예퇴직수당을 퇴직</p>	<p>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p> <p>6.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청의 백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계퇴직대상자로 선정, 추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7.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경계퇴직수당지급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p> <p><b>◎서울특별시공고제 44 호</b> 제 2 종 전기공사업영업정지 전기공사법 제 29 조 제 2 항 규정에 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등번호 제 42 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1989. 1. 서울특별시 장</p>
---	--

- 다 음 -

면허번호	업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	영업정지기간
제 553 호	대명전기건설공사	영등포구당산동 4가 31-2	고감모	'89.1.19-'89.3.18 ( 2월 )

<p><b>◎서울특별시공고제 46 호</b> 도시계획시설 ( 운동장, 학교, 공공의청사, 가스공급설비, 사회복지시설, 도로) 변경및신설안공람공고</p>	<p>1. 도시계획법 제 15 조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 장소에서 14일간 도시 소유자 및 아래 관계인에게 노입니다.</p>
--	---

2. 도시계획안이 대한의 의견이

있음시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장소: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나. 공람기간: '89.1.21-'89.2.4

다. 도시계획시설(운동장, 학교, 공동의정사, 가스공급설비, 사회부지시설) 결정 및 변경안

1989. 1. 2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공고제 54 호

1989년도서울특별시공무원 제안모집공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89년도 제안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9. 1.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제도의 목적

-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구안의 장려개발 및 자기양양
- 행정기능의 효율화와 업무 절감
- 행정조직의 환경적응력 향상 및 시민편익 증진

2. 제안 대상 및 범위

- 제안 대상
  -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중앙부처 소관업무 제외)
  - 대민 봉사행정 개선방안
  - 기계설비 및 운경외 관한 사항
  - 예산절감, 에너지절감, 세수증대 및 기타 개선사항 등
- 시, 구 제안제도 운영의 다른 제안 범위
  - 시제안제도: 자치구 사무를 제외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 구제안제도: 자치구 사무에 관한 사항

3. 제안의 종류

- 자유제안: 과제선정이 자유로운 제안
- 직무제안: 직무 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얻어진 개선효과를 극한 경우의 소속공직(사업소 포함)이 추천하는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제안: 각구의 제안규칙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제안이거나 채택 실시중인 제안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당해 제안윤 채택한 구청장이 추천하는 제안</li> </ul> <p>4. 제안자의 자격과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자격: 서울특별시소속 및 구 소속 공무원(별정직, 고용직포함)</li> <li>○ 제안자의 수: 단독제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내용의 전문성등으로 공동제안이 불가피한 경우 업무분담 및 제안에 기여한 공로도라 공동제안을 하게된 사유</li> </ul> <p>7. 장안자에 대한 특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표창 및 부상금 지급</li> </ul>	<p>서류 첨부·공동제안 할수 있다</p> <p>5. 모집기간: '89.1~'89.8.31</p> <p>6.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서 3부(서식별첨류 1.)</li> <li>· 제안내용 설명서 3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개요, 현황, 현행상의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등</li> </ul> </li> <li>· 직무, 추천제안추천서 1부(직무, 추천제안에 한함): 서식별첨류 2</li> </ul> </li> <li>○ 제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안자가 직접 제출하거나 문서함 이용 제출</li> </ul> </li> </ul>				
<p>창안 등급</p>	<p>금 상</p>	<p>은 상</p>	<p>동 상</p>	<p>장려상</p>	<p>노력상</p>
<p>부상금(최고액)</p>	<p>500 만원</p>	<p>250 만원</p>	<p>150 만원</p>	<p>50 만원</p>	<p>30 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상 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안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li> <li>· 상여금지급</li> <li>· 장안실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li> </ul> </li> </ul> <p>8. 제안으로 볼수없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것</li> <li>○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발명 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것</li> <li>○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li> <li>○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li> <li>○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진의, 또는 불만의 표기에 불과한 것</li> </ul>				

(별지제 1호서식)				
수신: 서울특별시청		<input type="checkbox"/> 자유 <input type="checkbox"/> 지정	제안서	
제안 내 용	① 제안의 분류	<input type="checkbox"/> 행정제도분야 <input type="checkbox"/> 과학기술분야	② 심사 번호	
	③ 제 목			
	④ 개 요			
	⑤ 현행상의 문제점			
	⑥ 현행과 대비	현행	개선	
효과	⑦ 예산 절감액	⑧ 국고또는조세 수입증대액	⑨ 행정개선 효과	
결.....취.....선.....				
제안 자	⑩ 한 글	⑪ 주민등록 번호	⑫ 접수번호	
	⑬ 소 속	⑭ 직 급	⑮ 심사번호 ⑯ 연락전화 번호	
	⑯ 주 소			
서울특별시 공무원 제안규칙 제 16 조에 의거 자유 직정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㉑				
첨부: 1. 제안내용설명서 2. 경비절감 및 국고 또는 조세 수입증대액 산출내역서 3. 참고자료 4. 직무제안추천서 (직무제안에 한함)				
1205-1A 81.7.18 승인		195mm×268mm인쇄용지 (특급) 70g/m <sup>2</sup>		

( 2 호 서 식 )	
직 무 · 추 천 제 안 추 천 서	
서울특별시청 귀하	
제 안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연 령 :
제안자의담당업무	
제안자의공적개요	
직무제안내용 개 요 참 의 성 개 선 효 과	
의 건	
위와같이 직무, 추천 제안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명    직    위	성    명
직    인	실    인

◎서울특별시공고제 65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및관계도면공람

1. 하수도법제 6 조 및 제 13 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 하수도에 관하여 하수도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거 15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및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등포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여준다.
3. 토기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별도 통지를 생략하고 이공고로 갈음한다.

1989. 2. 10  
서울특별시장

공람 및 공고 개요

1. 사용개시년월일 : 별첨조서 참조
2. 배수구역 : 별첨조서
3.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위치 양평 1 가 244-251 간의 4개소 하수도 포장공사의 20건
4. 사용을 개시하려는 공공하수도의 압류식 또는 분류식의구분: 압류식

공 고 및 공 람 개 요

연 번	위 치 (공사명)	사 실 개 요	사용개시 년 월 일	배수구역	구 별
1	양평 1 가 244-251 간의 4 개소 하수도포장공사	D=450% L=384 m D=600% L= 82 m D=700% L=580 m	'88. 12.29	안산역 2 구 안압류식	
2	신길 6 동 482 주변의 1 개소 도로및하수도공사	D=450% L= 72.5m D=600% L=100 m	'88. 12. 8	"	"
3	대림 2 동 1012 주변 하수 도및포장공사	D=450% L= 510 m	'88. 12.16	"	"
4	대림 2 동 1092 주변의 1 개소 하수도포장공사	D=450% L= 1,395.5 m	'88. 12.28	"	"

연번	위 치 ( 공 사 명 )	시 설 개 요	사용개시 년 월 일	배수구역	구 별
5	신길 5 동 420의 11 개소 하수도 포장공사	D = 450% L = 102.5 m D = 350% L = 112.5 m D = 300% L = 12.5 m	'88. 12.27.	안 양 천우안	합류식
6	신길동 413 의 10-405 간 도 로 개설공사	D = 450% L = 372.5 m D = 600% L = 135 m D = 800% L = 74 m D = 900% L = 145 m	'88. 12.15.	"	"
7	도림국교앞 도로 개설 공사	D = 600% L = 290 m	'88. 12.28.	"	"
8	신길동 120 - 대신시장. 도 로개설공사	D = 450% L = 193 m	'88. 12.29.	한강좌안	"
9	해군훈부 - 도림로간 도로 개설공사	D = 600% L = 307 m	'88. 12.27.	도 립 천우안	"
10	신길 6 동 4500-4524 간 도 로 개설공사	D = 700% L = 180 m	'88. 12.29.	한강좌안	"
11	신길 1 동 58-64 간 하수도 포장공사	암거 ( 1.5 × 1.5 ) m L = 250 m	'88. 8. 27.	"	"
12	신길동 197 및 4916 주변 하수 포함공사	D = 700% L = 52.5 m D = 450% L = 242.5 m	'88. 8. 19.	"	"
13	영등포 6 가 13-14 간의 3 개소 도로정비공사의 2 건	D = 450% L = 40 m	'88. 8. 5.	도림천우안 안양 "	"
14	영등포 1 가 31, 113 번지 주 변 도로정비공사	D = 450% L = 220 m	'88. 8. 22.	한강좌안	"
15	당산 3 가 223, 296 주변외 2 건 도로정비공사	D = 450% L = 902.5 m	'88. 8. 25.	안양천우안	"
16	문래 6 가 23-25 주변도로 및 하수도 공사	D = 600% L = 105m D = 500% L = 92.5 m D = 450% L = 125 m	'88. 12.16.	"	"
17	신길 1 동 89-464 간 도로 및 하수도공사	D = 450% L 292.5 m	'88. 10. 4.	한강좌안	"



연번	위 치 (공 사 명)	시 설 개 요	사용개시 년 월 일	배수구역	구 별
18	신길 6 동 4366-4399 간 도 로 및 하수도공사	D= 600 $\%$ L= 26 m D= 450 $\%$ L= 392.5 m	'88. 12. 5.	한강좌안	합류식
19	양명 1 가 43-23 주 변 도로 및 하수도 공사	D= 800 $\%$ L= 107.5 m D= 700 $\%$ L= 212.5 m D= 450 $\%$ L= 56 m	'88. 11. 11.	안 양 천 우 안	.
20	신길 4 동 205 주 변 도로 및 하수도 공사	D= 600 $\%$ L= 135 m D= 500 $\%$ L= 47.5 m D= 450 $\%$ L= 160 m	'88. 12. 8.	한강좌안	.
21	양명 동 5 가 120-131 간 도 로정비 공사	D= 450 $\%$ L= 291 m	'88. 12. 29.	안 양 천 우 안	.

◎ 서울특별시공고제 71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 48 호 (74.3.15) 로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사업 (도로) 의 사업실시 제외인가 에 따른 서류의 공람공고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의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 의 2 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 합니다.
  -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형자는 본공 고로 가롭합니다.
- 가 공람장소 : 송파구청 기록과(전화 410-3406)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1989. 1.

서울특별시 장

- 공 랑 개 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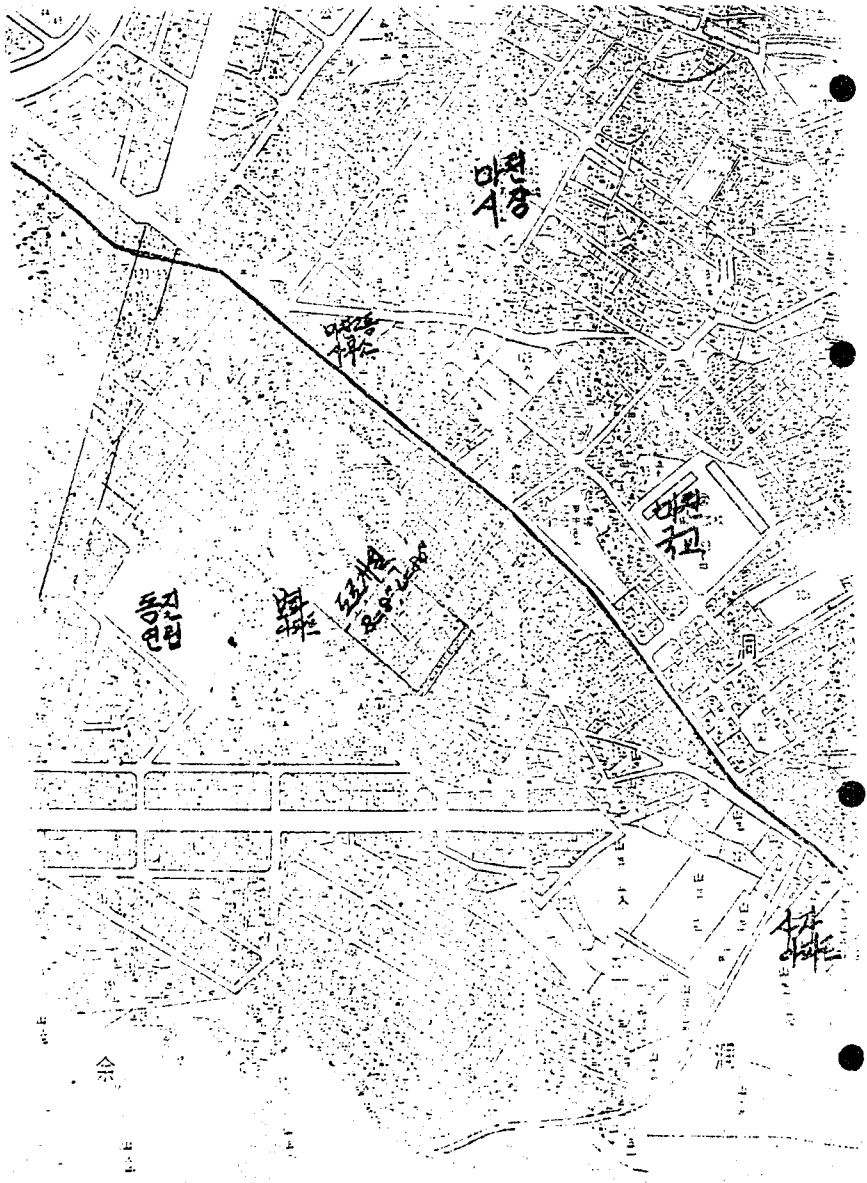
- 사 업 명 : 거여동 205 번지 도로개설공사
- 사업시행지 : 거여동 205.38~208.37
- 사업 구 모 : 도로개설 B= 8m, L= 80 m
- 사업시행기간 : 인가일로부터 1년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 기 타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문의 제출 바람.

1. 토지조사						
위 치	지목	면적 (㎡)	수 용		토 지 대 장 상 소 유 자	
			지 번	면적(㎡)	주 소	성 명
거여동 205-38	대	106	205-38	106	송과구거여동 181-649	김 순 응
" 205-35	대	85	205-35	85	강동구천호동 47-24	김 수 남
" 205-34	대	95	205-34	95	"	"
" 205-29	대	76	205-29	76	송과구거여동산 54	한국기독교장노회 거 양 교 회
" 205-46	대	9	205-46	9	송과구거여동 205-14	서 기 환
" 205-11	대	102	205-11	102	관악구상도동 322-14	유 의 준
" 208-59	대	148	208-59	148	시대문구홍제동 133-2	문 창 옥
" 208-130	대	3	208-130	3	송과구거여동 204	송 재 섭
" 208-129	대	15	208-129	15	성동구구의동 269	이 름 신
" 208-37	대	36	208-37	36		박 울 시
" 208-114	대	21	208-114	21		"
2. 건물조사						
위 치	구 조	수 용		건물관리대상소유자		건 물 관 리 코 드 번 호
		지 번	면적(㎡)	주 소	성 명	
거여동 208-39	세면와합 시멘부벽조	거여동 208-39	5.6	거여동 204	송재섭	
" 208-38	"	" 208-38	11.6	" 208-38	최상철	
" 208-38	세면벽돌조 스라브	" "	3.08	" "	"	

위 치	구 조	수 용		건물관리대상소유자		건 물 관 리 표 드 번 호
		지 번	면적(㎡)	주 소	성 명	
거여동 208-37	연와조 세면기와	거여동 208-37	40.71	거여동 208-37	가수현	
" 208-37	세면벽돌조 소라보	"	6.75	"	"	(참고)

3. 지상물조사

위 치	지상물명	수 량	단 위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거여동 205-35	담 장	13	M	강동구천호동 47-24	염수남	
" 205-35	철대문	1	식	"	"	
" 205-34	담 장	20	M	"	"	
" 205-29	"	12	M	거여동안 54	한국기독교 장노회거일교회	
" 205-29	철대문	1	식	"	"	
" 208-39	담 장	2	M	거여동 204	송재섭	
" 208-39	철대문	1	식	"	"	
" 208-38	"	1	식	거여동 208-38	최상철	
" 208-37	담 장	2	M	" 208-37	가수현	
" 208-37	철대문	1	식	"	"	
" 205-11	화 단	1	식	관악구상도동 322-14	유익준	



<p>◎서울특별시공고제 81 호</p> <p>제 2 종전기공사업체행정처분 (취소)</p> <p>전기공사업법 제 7 조 제 2 항 및 제 12 조 1 항, 국제징수법 제 7 조 1 항의</p>		<p>규정 위반으로 아래 전기공사업체 의 대하여 전기공사업법 제 31 조에 의거 면허취소 조치하였음을 전기공사업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다.</p> <p>1989.1. 서울특별시장</p>				
면허번호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처분내용	사	유
392	동수전력공사	성동구중로동 241-28	박만달	취 소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제 2 항 제 12 조 제 1 항 국제징수법 제 7 조 제 1 항	
604	창원기전주	성동구성수1가 13-158	박상성	상 등	상	동
<p>◎서울특별시공고제 85 호</p> <p>2 종전기공사업체행정처분 (취소)</p> <p>전기공사업법 제 31 조 1 호의 규정에</p>		<p>의거 제 2 종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소 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의 규정에 의 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p> <p>1989.1. 서울특별시장</p>				
면허번호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취소일자	비	고
237	유일전설	중구충무로 4 가 95-1	홍순표	89.1.30	전기공사업법 제 7 조 위반	
283	광일전기	중구을지로 3 가 251-1	차주희	"	"	
<p>◎서울특별시공고제 105 호</p> <p>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안공람</p> <p>1. 도시계획법 제 16 조 2 및 같은법</p>		<p>시행령 제 14 조의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아래 장소에서 14 일간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2.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는 공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장소: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다. 공람기간: '89.2.4-'89.2.18  
 1989. 2. 4  
 서울특별시

다.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안

구분	등급	류별	폭원(m)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로	1류	10	62	고척동 76-356	고척동 76-139	
변 경	"	"	15	62	"	"	복원확장

구 고 시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제 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허가(취소)

1. 서울시고시 제 137 호(85.3.5)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결정되고 성동구고시 제 80 호로(87.12.12) 시행허가된 금호 4 가 1345-1 같은동 1346 번지 및 1347 번지일 도시계획사업(도로)에 대하여 당초 허가조건을 이행치 않아 도시계획 제7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요청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 12

성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성동구 금호 4 가 1345-1 같은동 1346 번지 및 1347 번지일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도로)취소
3. 사업의 규모: 도로건설(폭=4미터, 길이=60 미터).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88.2.25-88.7.31
5. 사업시행자 주소: 성동구 금호 4 가 등 1339 번지, 성명: 금강제화공업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유자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생략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제 1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변경허가

1. 서울특별시 용산구고시 제 5 호(83.6.3)로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 변경허가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4가 1번지일대 성심학원의 음악실 및 생활관 증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변경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공산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일다.

1989. 1. 11

공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호로 4가 1번지일대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변경허가

사업의 명칭: 성심학원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대지면적: 24,876㎡
- 2) 기존 건축면적: 9,303.51㎡
- 3) 신증축 건축면적: 716.15㎡ (지하1층-지상3층)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1)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호로 4가 1번지
- 2) 성명: 학교법인 성심학원 이사장 김재순

마. 사업기간: 당초 88.4.19-88.12.20

변경 88.4.19-89. 5.30

바.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의 소재

지, 지주, 지권, 소유권이전의 권리 관계 (성략)

◎서울특별시강동구고시제 3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 752 호 (88.9.14)

호로 고시한 아래사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 및 동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동시행령 제32조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89. 1. 25

강 동 구 청 장

- 다 음 -

- 1. 사업명: 상림동 대림산업주  
연립주택 신축공사
- 2. 사업주체: 종로구 수송동 146-2  
대림산업주  
대표 이원현
- 3. 사업시행위치: 강동구 상일동 178번지

4. 사업규모 및 사업시행기간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연 비 적	27,516.11 ㎡	27,050.37 ㎡	
구 모	연립주택 3층 10동 108세대 및 부대부리시설	좌 등	
사업시행기간	'88.9 - '89.12	'88.9 - '90.5	

첨 부 : 설계도서 (생략)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제 6 호

도시계획사업 (일단지주택조성사업)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646-446의 11필지 재단법인 새강원 장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1.12.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관악구 신림동 646-446의 11필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일단지 주택지 조성사업)  
 사업의 명칭 : 새강원 의숙 이전 확장  
 다. 사업시행규모 : 14,928 ㎡  
 라. 사업시행자 : 강원도 춘천시 봉의동 15번지 재단법인 새강원 장학회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87.11.11.  
 준공예정일  
 (당초) : '88.12.31.  
 (변경) : '89. 2.28.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 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허가

-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52호(’87.5.20) 및 동고시 제 632호(’87.9.10)로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5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시행을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 2. 관계도서는 동작구청·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1.27.

동 작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동작구 대방동 51-12 - 대방동 69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
-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용산구 원효로 1가 113-25  
현대자동차 서비스㈜ 조양래
- 라. 사업시행 규모  
폭 15 m, 연장 74 m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일: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준공일: 1989.5.30.
- 바.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생략)
- 사. 취지 및 경면도: 별첨 (생략)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제 9 호

민영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 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계획 신청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3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9.1.27.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 2. 사업주체: 흥국생명보험(주) 직장 주택조합의 3개 직장 주택조합  
대표 유동주
- 3. 사업시행지 및 사업규모  
가)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148-2외 1필지

나) 사업규모					
종 별	구 모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사업비(천원)
아 파트	13 층 1동 117 세대	5,359.0	1,248.72	13,308.61	5,208,350
상 가	3 층 1동				

다) 승인설계도서: 생략  
 4. 사업기간: 1989.1. . - 1990.10.31

**◎서울특별시관악구고시제 15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시행변경  
 허가(기간연기)

1. 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 121 호 ('88.12.21)로 도시계획사업(시장) 변경허가한바 있는 관악구 신림동 1523 번지 신림제일종합시장 증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6 조와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조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변경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성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2.2.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관악구 신림동 1523 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시장), 신림제일종합시장 증축

다. 사업시행규모  
 대지면적 - 3,026.7 ㎡  
 건축면적 [ 기존: 1,508.1 ㎡(변경없음)  
 증축: 4.85 ㎡( " )  
 연 면 적 [ 기존: 3,492.2 ㎡( " )  
 증축: 3,583.13 ㎡( " )

라. 사업시행자: 관악구 신림동 1523 번지 ㈜오인출산 대표 장경라

마.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착 공 일 - '85.6.15  
 준공예정일 [ 당초: '88.12.30  
 변경: '89. 6.30

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59 호

도시 계획사업 ( 도로, 하수도 )  
실시 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92 호 ( '79. 2. 28 ) 로 도시 계획결정 및 지적고사 된 " 올림픽대로 하단도로 건설공사 " 의 관련 도시 계획사업 ( 도로, 하수도 ) 실시 계획 인가를 위하여 도시 계획법 제 25 조의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7 조의 2 항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인에게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행자는 본 공고로 가름합니다.
- 가. 공람장소 : 송파구청 (토목과)  
( 전화 410-3405-8 )  
나. 공람기간 : '89.1. - '89.2.

1989.1.21.

서울특별시장

공 랑 개 요

1. 사업명 : 올림픽대로 하단도로 개설공사
2. 사업시행처 : 풍납동 301-7 ~ 301-11

3. 사업규모  
도로개설 B = 15 m, L = 90 m
4. 사업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2년
5. 사업시행처  
서울특별시장 ( 송파구청장 )
6. 기 타  
의견 및 상충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문의 제출 바람.

구 공 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제 2 호

도시 계획사업 ( 학교 : 유치원 )  
공 사 완 료

1.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제 4 호 ( '87.5.30 ) 및 용산구 고시 제 12 호 ( '88.11.10 ) 로 도시 계획사업 ( 학교 : 유치원 ) 시행의과 변경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산 1 의 8 일대 지성유치원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기 도시 계획법 제 57 조의 2 및 같은법 제 85 조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 관제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710-3385-7) 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19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산 1 의 8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도시계획사업 ( 학교 )  
 2) 명칭: 계성유치원  
 다. 사업시행규모  
 1) 사업시행면적: 9,689.40 ㎡  
 2) 건축면적: 3,544.06 ㎡ ( 감 3.76 ㎡ )  
 3) 규 모: 지하층 - 지상 4 층

라. 사업시행자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 가 1 의 6  
 성명: 재단법인천주연불수도원 유지재단 이사장 서정렬  
 가. 공사설계주소: 준공도면 별첨 ( 생략 )

◎ 서울특별시도봉구공고제 7 호  
 주택자재생산업 등록취소

다음 주택자재 생산업소는 88 년도 경사를 미필하여 주택건설 촉진법제 41 조의 2 규정에 의거 주택자재 생산업업종은 취소하고 공고합니다.

1989. 1. 10  
도 봉 구 청 장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상 호	대표자	등록품목	사 유
192	도봉구창동 700-27	삼인공업	창간준	창 호	검사미필

◎ 서울특별시공고제 41 호

도시계획사업 ( 도로, 하천 ) 실시 계획 변경

1. 서울특별시 고시제 546 호 ( 88.6.24 ) 로 도시계획사업 인가된바 있는 성내천상류복개 및 포장공사의 사업구간내 편입토지 변경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 제 25 조 2 항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 2 항 규정에 의거 공고

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합니다.

2.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

가. 공람장소: 송파구청 도록과  
 나. 공람기간: 1989. 1 ~ 1989. 2.

1989. 1. 27  
서울특별시 장

<p align="center">- 공 랑 개 요 -</p> <p>1. 사업명 : 성내천상류복개 및 포장 공사</p> <p>2. 사업시행구간 : 송파구마천동 250 번지 - 330 번지간</p> <p>3. 사업시행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복개 (2.5 m × 2.0 m × 2 편), L = 900 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로 B = 22 m, L = 800 m</li> </ul> <p>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p> <p>5.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일시 계획인카일로 보되 2년간</p> <p>6. 기타사항 : 의견 및 상세한 사항은 상경 공랑장소에 제출 및 문의바람.</p>
---	---

트 지 조 서

연번	지 번	지 적 (제)	지 목	소 구 자		비고
				주 소	성 명	
1	마천동 200-53	227	하천	서울시		
2	" 200-56	79	"	"		변경
3	" 200-2	344	도로	송파구청		"
4	" 202-18	157	대	"		
5	" 203-4	136	"	"		
6	" 200-54	87	하천	서울시		
7	" 203-2	53	대	마천동 169	이과자	변경
8	" 203-3	89	"	"	"	
9	" 202-19	131	"	마천동 170	구본업	
10	" 202-2	602	전	"	"	변경
11	" 200-55	341	하천	서울시		
12	" 204	235	전	마천동 329-32	한준동	
13	" 207-26	4	대	종로구명륜동3가25	윤일준	변경
14	" 207-45	123	"	강남구압구정동 297 번지현대아파트 112-1105	김양서	

연번	지 번	지 적 (㎡)	지 목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15	마천동 200-40	460	하 천	서 울 시		
16	" 207-46	139	대	마천동 128-110	김기현	
17	" 354-39	36.9	"	미 등 기		변경
18	" 354-40	69.8	"	마천동 354-3	박승관의1인	
19	" 354-41	20.1	"	" 188	김학식	
20	" 207-4	155	도 로	종로구명륜동3가25	윤일춘	변경
21	" 211-3	2	"	서 울 시		"
22	" 207-47	39	대	마천동 207-5	김진현	
23	" 211-77	50	도 로	서 울 시		
24	" 211-78	3	대	"		
25	" 211-79	1,604	하 천	"		
26	" 187-1	340	"	마천동 187-3	김기남	
27	" 211-57	78	"	서 울 시		변경
28	" 187-5	316	"	마천동 187-3	김기남	"
29	" 187-7	10	"	" 187-3	김기남	"
30	" 211-81	30	"	미 등 기		
31	" 211-59	892	"	서 울 시		변경
32	" 211-61	160	"	"		
33	" 212-14	43	대	마천동 212-7	박정환	
34	" 212-15	92	"	" 211-17	안경모	
35	" 212-16	140	"	" 296	임해경	
36	" 212-17	45	전	서대문구북아현동1-100	문경애	변경
37	" 211-84	347	하 천	미 등 기		
38	" 288-1	112	대	마천동 362-14	강문식	

연 번	지 번	지 적 (㎡)	지 목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39	마천동 288-2	69	임 야	송과구청		
40	" 288-9	93	"	강남구청담동 1-1 삼익아파트 6-901	오천숙	변경
41	" 288-3	16	"	마천동 288-3	김수희	"
42	" 288-13	49	"	송과구청		"
43	" 288-15	20	"	강남구청담동 1-1 삼익아파트 6-901	오천숙	"
44	" 288-12	16	"	동대문구청량리동 235-1 미주아파트 5-205	한진균	"
45	" 288-16	7	"	"	"	"
46	" 288-11	107	"	동대문구청량리동 235-1 미주아파트 5-205	"	"
47	" 288-20	9	도로	"	"	"
48	" 288-17	181	대	마천동 288-5	김경모	"
49	" 288-21	114	"	" 288-5	"	"
50	" 363-14	30.6	"	" 363-1	방호선외 1인	
51	" 363-15	38.2	"	미 등 기		
52	" 363-16	44.2	"	송과구청		
53	" 363-17	72.8	"	도봉구미아동 55-55	강희영	
54	" 363-18	101	"	미 등 기		
55	" 364-14	193.9	도로	서울시		변경
56	" 372-3	358.4	하천	서울시		"
57	" 364-13	129.1	대	마천동 364-13	박길호	"
58	" 288-19	70	임 야	서울시		"
59	" 287-17	55	대	성북구청동동 350-7	유연실	"

연번	지 번	지적 (㎡)	지 목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비 고	
60	마천동 283-67	26	대	마천동 283-56	고종훈	변경	
61	" 287-12	34	"	성북구정릉동 50-7	유연실	"	
62	" 287-18	5	도	마천동 287	최동운	"	
63	" 287-2	26	"	서울시		"	
64	" 287-19	16	"	송파구청		"	
65	" 287-21	10	"	"		"	
66	" 287-3	23	"	서울시		"	
67	" 287-4	21	전	"		"	
68	" 287-23	12	"	송파구청		"	
69	" 287-24	2	"	마천동 287-7	박금춘	"	
70	" 287-15	12	"	마천동 287-9(중로구창신동 138-84)	박종복 (김영구)	근저당 설정	
71	" 286-22	113	대	수원시장안구화서 1동 184-258	변재길		
72	" 286-23	34	도로	서울시			
73	" 286-24	133	대	마천동 286-11	박래형		
74	" 283-1	740	하천	서울시		변경	
75	" 286-25	267	대	송파구청			
76	" 287-7	21	전	서울시		변경	
77	" 211-62	97	하천	"		"	
78	" 211-68	72	"	"		"	
79	" 284-4	97	전	마천동 284-3 (마천동 115-4단위농협)	정재구	근저당 설정	
80	" 211-82	623	하천	서울시			
81	" 317-1	62	대	송파구청		변경	
82	" 317-8	62	"	"		"	
83	" 317-11	12	"	마천동 317-1	박경자	"	
84	" 317-7	135	"	"		"	
85	" 316-8	10	"	마천동 316	박항희	"	
86	" 317-9	21	"	"		"	
87	" 317-10	8	"	송파구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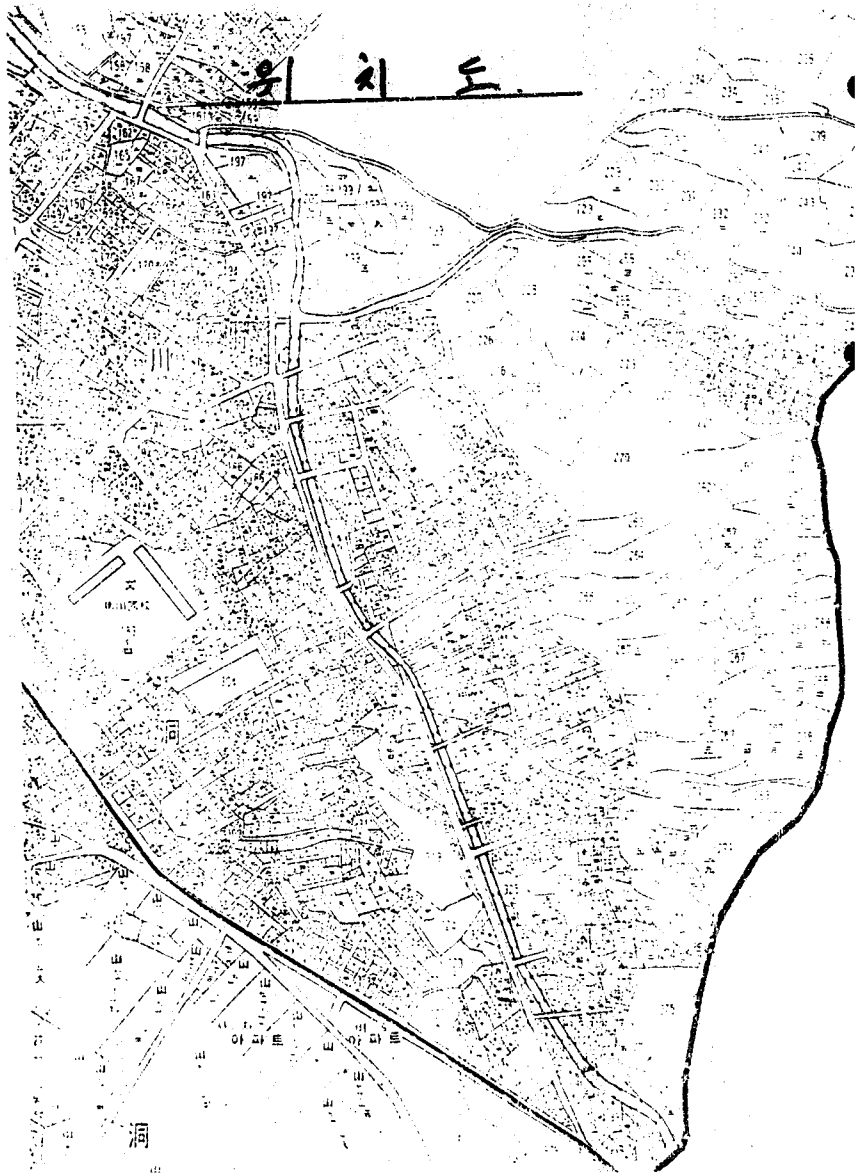
연 번	지 번	지적 (㎡)	지 목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88	마천동 211-64	17	하천	서울시			변경
89	" 211-69	334	"	"			"
90	" 283-101	2	대	동대문구용두동 29-143			
91	" 283-12	13	도로	서울시			변경
92	" 211-69	334	하천	"			"
93	" 211-70	83	"	"			"
94	" 211-83	628	"	"			"
95	" 325-16	33	"	"			변경
96	" 325-23	10	"	"			"
97	" 325-19	6	도로	"			"
98	" 325-13	91	임야	은평구 증암동 30-2	박정희		"
99	" 325-25	46	"	"			"
100	" 325-27	219	하천	서울시			
101	" 325-28	761	임야	송파구청			
102	" 325-29	235	하천	서울시			
103	" 326-5	144	대	종로구 교북동 72	정선분		변경
104	" 325-20	91	도로	서울시			"
105	" 325-15	49	임야	은평구 증암동 30-2	박정희		"
106	" 325-18	15	하천	서울시			"
107	" 329-13	43	대	가락동 179 가락시영아파트 82-108	송보경		
108	" 329-5	196	"	송파구청			
109	" 329-46	5	전	거여동 204, 마천동 273	한백영 정현구		
110	" 329-2	26	"	"			변경
111	" 329-12	208	대	송파구청			"
112	" 329-47	3	"	마천동 329-30	이충남		
113	" 329-48	18	"	"			
114	" 329-11	499	전	송파구청			

연번	지번	지적 (㎡)	지목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115	마천동 329-34	275	대	마천동 329-3 (마천동 329-34)	진병진 (박영환)	근저당 실적
116	" 329-9	119	"	중구신당동 80-87	신권용	변경
117	" 329-55	118	"	마천동 329-35	김영희	
118	" 329-56	99	"	송파구청		
119	" 329-57	95	"	마천동 329-10	윤광조	
120	" 329-58	77	"	" 329-39	박봉어	
121	" 329-50	51	"	" 329-25	함석하	
122	" 329-51	48	"	거여동 136-67	김막순	
123	" 330-40	120	"	마천동 330-23	김홍선	
124	" 329-52	45	"	강남구삼성동 22 번지상아아파트 7-403	성정자	
125	" 329-53	143	"	마천동 329-21	이요섭	
126	" 329-54	14	"	" 329-20	석정원	
127	" 330-24	119	하천	" 329-21	이성	변경
128	" 330-1	331	"	송파구청		
129	" 329-59	52	대	제주시이도일동 1419	김영부	
130	" 330-41	88	"	경기도과주군금촌읍마동리산 20	김득중	
131	" 330-42	120	"	송파구청		
132	" 277-44	85	하천	서울시		변경
133	" 330-32	16	"	강남구 청담동 30 구획 4	이재관	"
134	" 329-49	44	대	잠실동 329-17	오종근	
135	" 212-18	81	"	마천동 296	고계완	
136	" 213-18	2	"	동대문구용두동 39-446	한명수	
137	" 213-19	54	"	마천동 213-15	고두석	
138	" 364-15	53.4	"	도봉구미아동 55-55	강희영	
139	" 329-45	79	"	마천동 329-1	박종수	
140	" 354-39	36.9	"	미등기		
141	" 329-8	233	도로	중구신당동 80-87	신권용	

지 장 물 조 직					
지 번	부 조	면적 (㎡)	소 수		비 고 (모면)
			주 소	영 영	
마천동 202-18	시멘트보력조 스레트	차고 82.81 주택 72.93	마천동 128-1	이정길	202-1
* 207-46	시멘트보력조 스레트	31	마천동 128-110	김지현	207-1 (11)
* 212-24	연화조시멘트 기타보력조	17	상동구행당동 128-104	이달수	212-7 (20)
* 212-15	연화조시멘트 와음	19.37	마천동 217	안광로	212-1
" 212-16	연화조경육	1.9	마천동 211-72	추광로	212-1 (21)
* 286-22	시멘트보력 기타	15	마천동 286-8	정승호	286-8 (26)
* 329-45	시멘트와음 시멘트보력	61	마천동 329-1	박승우	329-1 (42)
* 329-29	*	11	마천동 335-72	이정길	329-1 (43)
* 329-25	보화조 시멘트와음	8	마천동 329-25	황수환	329-1 (44)
* 330-40	연화조경사 스타브워기와	55	마천동 329-21	이한우	330-1 (46)
* 329-22	연화조, 세면와음	22	상동동 125-61	이두현	329-1 (47)
* 329-53	연화조시멘트 와음보력조스레트	63	마천동 329-21	이로남	329-1 (48)
* 329-34	연화조경사 스타브워기와	기층 56.25	마천동 90-28	박종현	329-1 (49)

지 번	구 조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모번)
			주 소	성 명	
마천동 329-34	연와조경사 스라브위기와	1층 60.47 2층 60.47	마천동 90-28	박종현	(50)
" 329-55	시멘트 브릭조와즙	58	마천동 329-35	김영희	329-35 (51)
" 329-56	연와조세면와즙	49	풍남동 222-109	한혜경	329-36 (52)
" 329-57	연와조스라브 세면벽돌조	59	마천동 329-10	윤창조	329-10 (53)
" 329-58	연와조세면 와즙	38	마천동 330-26	박봉태	329-39 (54)
" 329-59	연와조경사 스라브위기와	21	제주시이도일동 1419	김영부	329-42 (55)
" 330-41	세면벽돌조 세면와즙	48	경기도파주군금촌 읍마촌리산 20	김득중	330-26 (56)
" 330-42	철근콘크리트 연와조경사 스라브	50	가락 257-1 가락한라아파트 9동 107호	김용성	330-29 (57)
" 354-40	연와조세면 와즙	11.3	기여동 181-274	김봉명	354-3 (1), (2)
" 354-1	연와조스라브 세면기와즙	3.4	마천동 188	김학식	354-1 (3), (4)
" 363-14	세면기와	32.5	마천동 363-1	최병웅	363-1 (5)
" 363-15	연와조명스라브	23.3	마천동 363-12	김종태	363-12 (6)
" 363-16	세면기와	11.1	마천동 363-11	김규봉	363-11 (7)

지 번	구 조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모번)
			주 소	성 명	
마천동 363-17	세면벽격조 세면기와	12.3	미아동 55-55	강희영	363-10 (8)
" 363-18	세면벽돌조 경사스라브위 기와	74.6	마천동 363-9	김덕영 윤재길	363-9 (9), (10) (11), (12)
" 364-13	조적조스라브	31.6	미아동 55-55	강희영	364-1 (13)
" 207-1	세면벽격조 스라브	31	마천동 128-110	김지현	11
" 207-2	천근콘크리트조 스라브	30	압구정동현내아파트 112-1105	김양서	9, 10
" 207-7	연와조 경스라 브	28	마천동 207-5	김진환	13, 14
" 286-8	세면벽격조	39	마천동 286-1	조중원	27, 28
" 286-8	"	21	" 286-8	권영수	29
" 286-12	"	38	" 286-12	주영학	31
" 286-12	"	25	" 286-12	최경화	24
" 286-12	"	17	" 286-12	이희철	36
" 286-11	"	7	" 286-11	박채형	30
" 383-40	연와조경육개	2	인천시남구운현동 563	이근호	37
" 286-24	세면기와	56.16	중랑구면목동 346-9	오인균	30-1



**㉔ 서울특별시동작구공고제 58 호**  
 관인 및 개인 신·개각  
 우리구 관인 및 개인 신·개각은 1989. 1. 25  
 동 작 구 청 장  
 : 조직제 1동장인 관인사무관  
 : 조직제 1동 관인사무관  
 1989. 2. 1  
 관인 인봉  
 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관인	제 각	관인인봉	관인인봉
----	-----	------	------

관인명 : 조직제 1동장관인 및 개인 관인사무관

**사 업 소 공 고**

**㉔ 서울특별시공고제 1 호**  
 동물사료구매입찰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구 분	종 류	입찰일시	입찰장소
제 1차	외	1989. 2. 15	당 사업소
제 2차	외	1989. 2. 16	당 사업소
제 3차	외	1989. 2. 17	당 사업소
제 4차	외	1989. 2. 18	당 사업소

2. 입찰참가자격: 제신회계법시행령제 98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제 10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당해 입찰에 응할 수 있다.

3.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현금 또는 제신회계법시행령제 96조에 규정된 이영보 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입찰등록시 납부하여야 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금채 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감사에 귀속함)

4. 입찰무효: 계약사무처리규칙제 22조 및 동물사료구매입찰공고제 5호에 의거함. (특수조건, 접수규격을 반드시 공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이한 사항은 당사업소 근무시간 503-69033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989. 2. 4.  
 서울특별시 동물대공민관리사업소 경리관

**공 지 사 함**

전화번호 변경안내

우리구청 구청장실에 전화번호가  
1989년 1월 17일 00:00를 기하여 아래

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 시 명	변 경 전	변 경 후
구청장실	877-0001	888-0001

1989.1  
관악구청장

**사 령**

© 1989년 1월 11일

5 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징계처분

형제 20 호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 재 건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1, 2, 3 호에 의거 " 파면 " 에 처함	내 무 국	지방전기과
김 광 식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제 1 항 제 2 호 에 의거 " 전책 " 에 처함	김포수원지사무소	지방토목기사보
김 제 철		남부건설사업소	지방토목기사

© 1989년 1월 17일

6 급이하 공무원 전보

형제 21 호

성 명	발 명 사 항	현 부 서	직 급
한 인 수	송 과 구	내 무 국	지방행정주사
김 장 건	도 봉 구	"	지방행정주사보
선 용 혁	성 동 구	"	"
정 순 구	영 등 포 구	"	지방토목기사보

서울특별시장



◎ 1989년 1월 12일 인사발령통지 명제 22호

서울특별시 내무국  
행정사무관 유 동 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89. 1. 12

서울특별시 내무국  
행정사무관 이 규 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89. 1. 12

서울특별시 내무국  
행정사무관 심 기 복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명함 89. 1. 12

내 무 국

◎ 1989년 1월 18일 5급 공무원 전보 명제 23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과급
유동조	간동구	내무국	지방행정사무관
이규권	강동구	·	·
심기복	노원구	·	·
손성호	교통관리사업소 관리과장	·	·
황인봉	전산담당관 전산관리계장	·	·

1989년 1월 18일		6급이하 임무원 파견		령제 24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설성수	보험연급과 파견 ( '89.1.18 ~ '89.5.30 )	관각구	지방행정주사	
장철수	"	도봉구	지방행정주사보	
이한성	"	서부취생처리장	"	
6급이하 기술직공무원 진보		령제 23 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수철	중앙건설본부	올림픽설비담당관	지방기계기사	
박성덕	"	"	"	
사경호	"	"	"	
박세관	한강관리사업소	"	지방전기기사	
오태상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올림픽토목담당관	지방토목기사	
김용춘	"	"	"	
김정근	개개발과	올림픽건축담당관	지방건축기사	
김진환	노원구	"	"	
정삼기	저개발과	"	"	
박수열	추구과	올림픽설비담당관	지방통신기사	
김길배	한강관리사업소	"	지방기계기사보	
안재오	중앙건설본부	"	지방전기기사보	
박종관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올림픽토목담당관	지방토목기사보	
장낙준	"	"	"	
이근배	강남구	올림픽건축담당관	지방건축기사보	
전석기	충청구	"	지방건축기사보	
이송기	이원운동장	올림픽설비담당관	지방통신기사보	
박응수	중앙건설본부	"	"	
장택상	뉴지사업소	올림픽토목담당관	지방인업직원	
장석준	양천구	목동지구개발사업소	지방건축기사보	

◎ 1989년 1월 17일 산하단체임원 임명				경제 26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광하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직 임함	신규		
◎ 1989년 1월 18일 3급 공무원 파견				경제 2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재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파견 ( '89.1.18 ~ '90.1.17 )	내무국	지방부이사관	
이신영		북부지구개발 사업소장	지방사업소장	
◎ 1989년 1월 19일 4급 공무원 파견				경제 28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유원종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파견 ( '89.1.19 ~ 북부지구까지 )	북부국	지방사업관	
손동수				
장석호		중구	건설국장	지방사업관
전태수		중로구		
이관식		양천구		
조병성		영등포수원지 사무소	소장	
최성삼		목동지구 개발사업소	설비공사 과장	지방사업 관

1989년 1월 20일 <u>3급 공무원 승진</u> <span style="float: right;">령제 29호</span>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류동주	전자재산소장 지방부이사관	전자계산소장 직무대리	지방서기관
박한경	내무국	내무국	"
최주하	한강관리사업소장 지방시설부기감	한강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지방시설기정
4급 공무원 승진임용 <span style="float: right;">령제 30호</span>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세영	동각구 건설국장 지방시설기정	동각구건설국장 직무대리	지방토목기정
1989년 1월 23일 <u>결임근무</u> <span style="float: right;">령제 31호</span>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권관	목동지구개발사업소장에 검임함	울림키피시설 건설관	지방시설부기감
서울특별시			

◎ 1989년 1월 20일 인사발령통지 령제 32호

서울특별시 문대문구청장 부이사관 이사관이 임함	김 원 오  89. 1. 20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부이사관 이사관이 임함	권 이 금  89. 1. 20
서울특별시 과각구청장 부이사관 이사관이 임함	박 철 원  89. 1. 20

과 통 령

◎ 1989년 1월 24일 5급이하 공무원 과건및 해제 령제 33호

성 명	발 령 사 항	전 부 서	직 급
추 광 식	검무과 과건해제	경 경 포 구	지방행정사무과
최 영 수	사회과 "	용 산 구	지방행정주사보
소 수 돈	전신담당관 과건 ( 89.1.24 ~ 89.6.30 )	중 구	지방행정주사

6급공무원 진출 령제 34호

성 명	발 령 사 항	전 부 서	직 급
정 기 원	대통령비서실 진출을 경함	총 무 과	지방행정주사

© 1989년 1월 24일 <u>기능직공무원 전보</u> <span style="float: right;">명제 35호</span>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재경	송파구 지방전기장 (기능 7등급)	강동구	지방전기장 (기능 7등급)
안상우	지방전기원 (기능 9등급)	"	지방전기원 (기능 9등급)
<u>기능직공무원 면직</u> <span style="float: right;">명제 36호</span>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윤석현	인계 의하역 그직을 면함	윤경과	지방전기원 (기능 8등급)
© 1988년 12월 21일 <u>기능직공무원 정규임용</u> <span style="float: right;">명제 37호</span>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김기범	금수과 지방기계원 (기능 8등급)	금수과	지방기계원시보 (기능 8등급)
윤석현	윤경과	윤영과	"
© 1989년 1월 26일 <u>4급 공무원 파견</u> <span style="float: right;">명제 38호</span>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위
이외웅	시장개발담당관(시장개혁연구위원 회 행정반장 요원) 파견 (89.1.26 - 별도지시시까지)	중랑구도시정비국장	지방서기관
			서울특별시

© 1989 년 1 월 25 일

인 사 발령

령제 39 호

서울특별시 비서관  
 별정직 4 급 상당  
 원에 의하여 그직을 편함

이 종 국  
 89.1.25

서울특별시 민방위국 비상지원국장  
 별정직 4 급 상당  
 원에 의하여 그직을 편함

김 종 진  
 89.1.25

© 1989 년 1 월 26 일

인 사 발령

령제 40 호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경함

한 복 우  
 89. 1.26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전출을 경함

정 보 성  
 89. 1.26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경함

노 수 만  
 89. 1.26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행정주사  
 행정사무관에 임함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경함

조 성 린  
 89. 1.26

1989년 1월 26일      기능직 공무원      면직      2명      4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처	직급
노수용	천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총무과	지방기제원(8등급)
1989년 1월 31일      지방별정직 5급상당 공무원징계      2명      4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처	직급
이재석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3호의 규정에 의거 "과면"에 처함	총무과	지방별정직 5급상당
1989년 2월 1일      4급이하 공무원      파면      3명      4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처	직급
김동환	국무총리(행정조직실(수도권개발사업추진위원회)과장(99.2.1~90.3.31))	마포구건설국장	지방시설기정
김준기		윤림서관담당장	지방행정사무관
김중태		총보장	
		상등파문정서관	
1989년 1월 31일      5급이하 공무원      면직      8명      4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처	직급
최영준	천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표목기획과	지방행정사무관
김석구	"	지도쓰레기처리장장	지방기계기정
홍관윤	"	양정	지방농림기사
박명천	"	세종문화회관	지방별정 5급상당
김경환	"	기획담당관	지방행정주사
김정근	"	재개발과	지방건설기사
유근명	"	차수과	지방토목기사





◎ 1989년 2월 4일 7급 공무원 정규임용 제 50호

성명	발령부서	발령직급	현부서	직급
진금성	민방위과	지방행정주사보	총무과	지방행정주사보사보
윤동식	가정복지과	"	"	"
오희선	사회과	"	"	"
유병덕	보원연금과	"	"	"
전기호	시민과	"	"	"
이정용	운영구	"	"	"

◎ 1989년 2월 8일 6급 공무원 파견해제 제 51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최석준	자동차관리사업소 파견해제	마포구	지방행정주사

◎ 1989년 2월 3일 산하단체 임원 면직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이재희	원에 귀하고 그직을 면함	서울시설관리공단이사장

◎ 1989년 2월 14일 3급 공무원 파견 제 52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도명정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시장, 군수 반과정) 교육과전(89.2.14~12.8)	내무국	지방부이사관
허관	"	"	"
박종욱	"	"	"
박한경	"	"	"

서울특별시청